

안양도시형생활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11.06.]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안양도시형생활주택은 대학생, 청년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 취지인 경기도행복주택 유형으로 공급대상자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하여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06.) 현재 기준으로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자의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됩니다.
- 청약은 우편접수만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 지 명	단지 위치	건설호수	최초 입주
안양도시형생활주택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6(안양동 497-10번지)	24호	2015.07

- 해당주택(지상 4층 24세대) : 1층 2세대, 2층 8세대(여성전용 구역), 3층 8세대, 4층 6세대
- 부대시설 : 주차장(15대), 엘리베이터 없음, CCTV 7대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 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형 별	세대당 건축면적 (㎡)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 모집 예비자 수
	공급면적 (㎡)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A-1	19.86	11.55	31.41	31.41	철근콘크리트벽식 /개 별 난방	13	0	20
A-2	20.79	12.09	32.88	32.88		11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거나 모집이 철회될 수 있으니, 접수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열람 시 반드시 확인 요망
- 상기 주택은 발코니 비확장형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홀, 관리실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으로 복도 및 발코니의 샤시는 일괄 시공되어 있음.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샤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냉장고, 세탁기, 옷장, 가스쿡, 에어컨, TV가 일괄 설치되어 제공 (침대 및 거실장은 세대별로 상이함)
- 개별난방이며, 주차장은 1층(필로티 및 옥외)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면수는 15대임.

- 인터넷·IPTV 일괄 설치됨(단, 관리비에 포함)
- 형별로 예비입주자를 분리하여 모집하지 않으며, 해약세대 발생시 등기 소인일자에 의거하여 계약을 진행함.
(등기 소인일자가 같을 경우 공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
- **상기조건에도 불구하고, 2층 8세대는 여성전용구역이므로 2층 공가 발생시 여성 당첨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 금회 공고는 **기존 공가 및** 기존계약자의 해약시 발생하는 공가에 입주하기 위한 추가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공고임. 따라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최초(20년 11월 신청자) 모집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최초 모집공고일(20.11.06.)이며, 이후 잔여분 모집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입주 신청월의 1일」입니다.
- 이 주택은 1인가구에만 공급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므로, **2인이상 거주는 불가능함.**
- 세부 유의사항은 본 공고문내 9번 유의사항을 확인할 것.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타 문의사항은 기재된 문의처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구분	임대조건 (원단위)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대학생	3,820,000	764,000	3,056,000	297,500	34,000,000	37,820,000	127,500
청년	3,820,000	764,000	3,056,000	319,500	36,000,000	39,820,000	159,500

- 공급주택 타입별 면적의 차이가 있어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동일하며, 공급대상자 입주자격에 따라 월 임대료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4. 신청자격

■ 신청자격(공통)

- 예비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갖춘 대학생 또는 청년이며, 무주택자인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생 계층 중 예외적인 사항 제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안양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요건은 입주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시에는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0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자 격 요 건

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③ 무주택자 일 것

④ 혼인 중이 아닐 것

⑤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대학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기준
1인	2,645,147
2인	4,379,809
3인	5,626,897
4인	6,226,342
5인	6,938,354
6인	7,594,083

** 6인이상의 가구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 증가수에 따라 1인당 평균 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이하 가구 월평균소득)/2]을 합산하여 산정

⑥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의 합산 기준이 아래 금액 이하일 것

총자산 가액	자동차 가액
7,800만원이하	자동차는 무소유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함
-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 대학생 계층으로 과거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 가능함.(병역의무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시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청년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0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청년	①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사람.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대학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④ 혼인중이 아닐것 ⑤ 무주택자 일 것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table><tr><th colspan="2">가구원수</th><th colspan="2">월평균소득 기준</th></tr><tr><th></th><th></th><th>해당세대</th><th>청년 본인</th></tr><tr><td rowspan="6">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td><td>1인</td><td>2,645,147원</td><td>2,116,118원</td></tr><tr><td>2인</td><td>4,379,809원</td><td>3,503,847원</td></tr><tr><td>3인</td><td>5,626,897원</td><td>4,501,518원</td></tr><tr><td>4인</td><td>6,226,342원</td><td>4,981,074원</td></tr><tr><td>5인</td><td>6,938,354원</td><td>5,550,683원</td></tr><tr><td>6인</td><td>7,594,083원</td><td>6,075,266원</td></tr><tr><td>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td><td>청년 본인소득만 기준</td><td colspan="2">2,116,118원</td></tr></table> ** 6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청년 본인은 524,58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⑦ 신청자 본인의 자산 가액의 합산 기준이 아래 금액 이하일 것 <table><tr><th>총자산 가액</th><th>자동차 가액</th></tr><tr><td>23,700만원이하</td><td>2,468만원이하</td></tr></table> ⑧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기준				해당세대	청년 본인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1인	2,645,147원	2,116,118원	2인	4,379,809원	3,503,847원	3인	5,626,897원	4,501,518원	4인	6,226,342원	4,981,074원	5인	6,938,354원	5,550,683원	6인	7,594,083원	6,075,266원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청년 본인소득만 기준	2,116,118원		총자산 가액	자동차 가액	23,700만원이하	2,468만원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기준																																			
			해당세대	청년 본인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1인	2,645,147원	2,116,118원																																		
		2인	4,379,809원	3,503,847원																																		
		3인	5,626,897원	4,501,518원																																		
		4인	6,226,342원	4,981,074원																																		
		5인	6,938,354원	5,550,683원																																		
		6인	7,594,083원	6,075,266원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청년 본인소득만 기준	2,116,118원																																			
총자산 가액	자동차 가액																																					
23,700만원이하	2,468만원이하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취업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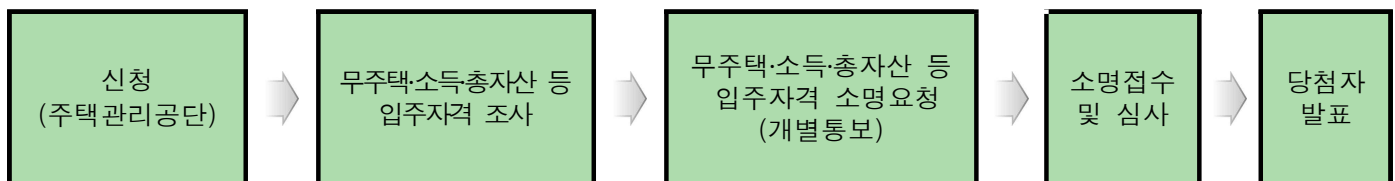
5. 공급일정 및 선정절차

■ 공급일정 및 장소

단지명	공급대상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접수 및 우편 송부 장소
안양도시형 생활주택	대학생 / 청년	2020.11.16. ~ 2021.02.28 선착순 수시접수 (모집인원 충족시 마감) 우편접수만 가능 (21.02.28 소인까지 접수가능)	입주자격 적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서류접수 후 2개월 정도 소요)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 세교프라자 401호 (우편번호 : 18110)

- 성별, 대학생 및 청년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서류접수시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입주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을 진행함.
- 신청자가 자격조회조건(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여 당첨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시 신청시 지정한 호수를 계약함.
- 당첨자 안내는 접수된 핸드폰번호로 유선 또는 문자로 개별통보함.
-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접수, 인터넷 및 청약접수는 받지 않음.

■ 선정절차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여부는 신청시 작성하였던 휴대폰번호와 주소로 발송되는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번호 변경 또는 주소이전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당첨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접수순서에 따라 지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처
주택임대신청서 (별지1)	신청자 작성 제출	공사서식 (공고문참고)
무주택서약서 (별지2)	신청자 작성 제출	공사서식 (공고문참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3)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및 서명 • “청년”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작성 및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서명시 싸인 불가. 이름 정자기입만 가능.	공사서식 (공고문참고)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별지4)		
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5)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센터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로 발급 •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센터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 .	• 주택임대신청서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1부. • 주택임대신청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주민센터
대학생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1통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확인서(각서) : (별지6)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해당학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1통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 (추가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 1통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1통	주민센터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추가서류)	(청년 자격요건 세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서류를 선택적으로 접수) •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 1년 이내 퇴직한 직장에서의 구직급여 수급증명서 1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예술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통 (공통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청약저축가입내역서 1부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금융기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항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물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방부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보험처 등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tr><td>대 학생</td><td>6년</td></tr><tr><td>청년</td><td>6년</td></tr></table> • 대학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 학생	6년	청년	6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 학생	6년														
청년	6년														
갱신계약등	■ 갱신계약 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청년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급대상 변경 갱신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고, 갱신계약시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가구원수가 1인가구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														
중복신청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청년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주택위치안내



- ※ 대중교통 : ① 지하철 1호선 명학역 1번 출구 안양만안경찰서 방면 도보 15분
 ② 일반버스 6, 6-3, 마을버스10-1,10-2 (만안경찰서/안양도서관 하차)

11. 내부사진



문의처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031-378-1040
인터넷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분양안내 → 분양광고→ 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2020.11.06.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주 택 임 대 신 청 서

접수번호

지구명 안양도시형생활주택

위 치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6(안양동 497-10번지)

● 별지 외 제출(구비)서류 [확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확인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11. 06.)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세대구성일자,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세대원과 세대주간의 관계, 세대원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대학생으로 지원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대학생 (추가서류)	☐	① 재학증명서 1통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②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1통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③ (추가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 1통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1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추가서류)	☐	(청년 자격요건 세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서류를 선택적으로 접수) ☐ ①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 ② 1년 이내 퇴직한 직장에서의 구직급여 수급증명서 1통 ☐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예술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통 (공통제출서류)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⑤ 청약저축가입내역서 1부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① 주택임대신청서 인감도장 날인시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1부. ☐ ② 주택임대신청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와 같이 임대주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20. . .

도 로 명 주 소 :

신 청 인 : (정자서명 또는 인감날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전대금지】

- 이 주택은 경기도 소유로 공사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매매, 증여, 기타권리의 변동 일체)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전대인 및 임차인(제3자) 모두 계약서에 의거 강제퇴거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서약서

√ 다음의 설명을 읽어 본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아래의 행복주택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에 해당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① (주택)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 ②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 및 자산가액의 합이 아래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자동차 기준 이하임

□ 대학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기준 가구원수						총자산가액	자동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대상자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00% 이하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7,800만원	무소유

□ 청 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기준 가구원수						총자산가액	자동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대상자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80% 이하	2,116,118	3,503,847	4,501,518	4,981,074	5,550,683	6,075,266	23,700만원	2,468만원

년 월 일

서약자
(계약자)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

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정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갱신계약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

- ①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②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29.>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 실을 동의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원	[임차인]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원	[수분양자]	
		아니오 ☐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원	[출자자]	
		아니오 ☐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신청인 : (인) 20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임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담정에개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위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위탁자, 경기주택 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위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위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액, 입주자 계약내용 등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복학예정 확인서)

각 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안양도시형생활주택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경기주택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